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연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738

발의연월일: 2025. 1. 23.

발 의 자:이연희·박상혁·허종식

한준호 • 한민수 • 김남희

이수진 • 복기왕 • 유종군

박 정ㆍ이정문ㆍ문진석

이광희 · 정준호 · 이춘석

손명수 의원(16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4년부터 시행 중인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세액공제조항이 신설되어 시행 중에 있음.

그러나 자원개발의 범위가 광물확보에만 한정되어 있어 자원의 확보와 개발을 통해 공급망 안정을 확보하려는 법안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.

특히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의 핵심요소인 이차전지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중 리튬. 흑연 등의 경우 없어서는 안 될 광물이지만 특정국가 에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 공급망위기에 취약한 상황임.

리튬, 흑연 등과 같은 필수광물의 경우에는 정제련 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, 특정 국가에서 수출 통제 시 요소수 사태와 같은 공급망 위기를 맞아 이차전지의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함. 이에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필수광물의 정제련 시설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시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시켜 공급망 확보를 돕고자 함(안 제104조의15).

법률 제 호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4조의15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물의 정제·제련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(이하 이 조에서 "정제련시설"이라 한다)을 신 설 또는 취득하기 위한 투자
- 3. 투자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정제련시설을 신설 또는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104조의15
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4조의15(해외자원개발투자에	제104조의15(해외자원개발투자에
대한 과세특례) ① 「해외자원	대한 과세특례) ①
개발 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	
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(이하	
이 조에서 "해외자원개발사업	
자"라 한다)가 같은 조 제4호	
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위하	
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	
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	
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	
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	
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	
투자 또는 출자가 이루어지는	
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	
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	
해당한다)에서 공제한다. 다만,	
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	
회사(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	
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	
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	
인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	
같다)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	

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 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 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 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투자 또는 출자금액에 대한 세 액공제액 상당액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 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세 액은 「소득세법」 제76조 또 는 「법인세법」 제64조에 따 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

1. ~ 3. (현행과 같음)  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물의  정제·제련을 위한 시설로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(이  하 이 조에서 "정제련시설"이
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물의 정제·제련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(이
정제·제련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(이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(이
하 이 조에서 "정제련시설"이
라 한다)을 신설 또는 취득하
기 위한 투자
②

다.	
1. • 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3. 투자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
	지 정제련시설을 신설 또는
	취득하지 못하는 경우
③・④ (생 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